

교습비등 고지

년 월 일 현재

[illegible]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.

이
고
지

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

(서명 또는 인)